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분증권(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포함), 채무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중 지분증권(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포함), 채무증권 등 및 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적용하며, 매매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분증권(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포함)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중 한국증권거래소 및 해외상장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2. 채무증권 등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과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3. 관련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으로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중 국내상장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등에 관련이 있는 것

제3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① 지분증권(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포함)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지분증권(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포함)

구 분	리서치	정보제공 및 기업방문	거래체결
배점기준	60%	30%	10%

2.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구 분	매매수행능력	정보제공	백오피스(Back-office)지원
배점기준	60%	30%	10%

②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구 분	매매체결능력	정보제공능력	거래보안유지	결제이행능력	기타
배점기준	35%	35%	10%	10%	10%

제4조 (평가방법)

① 지분증권(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포함)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아래 원칙에

의거 평가한다.

1. 월별 평가를 원칙으로 함
2. 평가주체는 주식운용본부에서 하되 팀별로 평가할 수 있음
3. 리서치 평가는 투자중개업자 회사전체 역량(자료: DB 등 제공, 세미나 등 지원)을 참고하여 정량적으로 평가
4. 정보제공 및 기업방문 평가는 투자중개업자 업무담당자 역량(기업분석의 적시성, IR미팅 혹은 NDR 일정 확보 능력 등)에 대해서 평가
5. 거래체결 평가는 운용관련지원 평가(체결가격 및 대량매매 수행 능력, 신속 정확한 주문 수행 등)
6. 상기평가항목 이외 주식운용담당부서 내부합의 및 결재절차를 거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음

②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아래 원칙에 의거 평가한다.

1. 분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함
2. 평가주체는 Fixed Incom본부에서 하되 채권관련 연관부서 참여가능
3.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매시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선정 가능

제5조 (약정배분기준)

① 지분증권(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포함)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각각의 경우

1. 약정배분기준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정함
2.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증권사는 20개사를 선정함
3. 상기 선정된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90%이상 배정하되, 상위 3개사에 대해서는 75%이하 배정함
4. 특정회사 최대 배정가능한도는 50% 이내로 함
5. 블록매매 및 거래편의 등을 위해 10% 한도에서 기타 증권사와 거래

할 수 있음

6. 단, 인덱스형의 경우는 지분증권(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포함)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여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며, 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른 해당증권사는 25개사로 선정한다.

②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각각의 경우

1. 약정배분기준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함
2. 채무증권 등(기업어음 제외)의 대상기관은 Tier1 5개사, Tier2 5개사 이내에서 선정하고, 기업어음의 대상기관은 5개사 이내로 선정하며, 채무관련 장내파생상품 대상기관은 10개사 이내로 선정함
3. 상기 선정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채무증권 등(기업어음 제외)은 Tier1에 40% 이상, Tier1과 Tier2를 합하여 60% 이상 배정하고, 기업어음은 대상기관에 70% 이상 배정하며, 채무증권 등 관련 장내파생상품은 70%이상 배정함
4. 특정회사 최대 배정가능한도는 총 약정금액의 50% 이내로 함

③ 거래금액이나 거래건수가 많지 않아 계획한 중개사 배분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위 약정배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보관 및 관리)

① 준법감시인은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평가한 내역과 실행내역을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경우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 본부장 또는 팀장에게 소명이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본부장 또는 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련 해당 본부는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평가 및 실행내역 자료를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외사항) 인덱스형 등과 같이 투자전략 및 거래유형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5조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동 기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 기준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 기준은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 기준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